

노들섬 특화공간 주차장 이용 및 운영 규정

제정 2021.08.12.

개정 2022.0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노들섬 특화공간 운영자인 인터파크노들씨어터(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서울시를 대행하여 운영·관리하는 노들섬 특화공간(이하 “노들섬”이라고 한다)의 주차장 운영·관리 및 차량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접한 한강대교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01>

제2조(적용 범위) 노들섬 특화공간의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약에 따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범위’는 운영자가 서울시를 대행하여 운영·관리하는 공간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2.04.01>
2. ‘주차관리부서장’은 주차업무 계획, 규정 정립, 민원처리, 서울시와 업무교류 등을 총괄 관리하는 운영자가 지정한 담당 직원을 말한다.
3. ‘주차관리원’은 주차관리부서장의 통제 하에 노들섬 주차장 내 입·출차를 주차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주차안내와 통제 및 주차질서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입주자’는 운영자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운영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사용자(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대관자’는 「노들섬 특화공간 대관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사용권한을 취득한 사용자를 말한다.
6. ‘일반주차’는 노들섬 관련 업무, 행사 등의 목적을 제외한 일반 이용 차량의 주차를 말한다.

제4조(주차 운영시간)

1.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 무인정산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 수요, 교통 혼잡, 풍수해 등 여건에 따라 개방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주차 수요가 많고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차장에 주차

관리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구역의 구분)

1. 노들섬 주차장의 이용자는 지정된 구역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구역은 [별표1]과 같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구역을 조정 및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규모 행사 시) 노들섬 내 대규모 행사 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잔디마당 행사로 인해 일방통행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행사 관계자는 별도로 주차관리원을 두고 주차장 이용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행사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와 관련된 차량 중 장시간 주차가 예상되는 차량에 한하여 제3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11조의 월정기권 등록 차량을 포함한 일반주차의 이용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사와 관련된 주차 대수 및 교통 혼잡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주차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행사 관계자는 각 호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행사영업 7일 전에 노들섬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제2장 주차요금 및 감면

제7조(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내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노들섬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최초 30분은 1,000원이며 초과 10분당 300원씩 가산된다. 단, 주차요금은 입차 후 10분이 초과하면 적용된다.
2. 일일 요금 상한제를 적용하여 15,000원으로 한정한다.

제8조(주차요금의 정산)

1.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계산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없을 경우 주차관제시스템 위탁관리업체 콜센터 또는 주차관리원의 안내에 따라 납부토록 한다.
2. 제9조 제1호에 의해 주차요금을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 콜센터 또는 주차관리원을

통해 확인 후 적용받을 수 있다.

3. 주차시간 미 인식 시에는 주차관제시스템의 입차 기록을 확인하여 요금을 정산한다.

4. 이외 사항은 주차관리원을 포함한 주차관리부서 운영에 따른다.

제9조(주차요금의 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라 한다)」에 따른 할인대상 및 요율은 [별표2]와 같으며, 1,000cc 이하의 이륜차는 [별표2]의 경차 할인에 준하는 가격을 징수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노들섬 업무 관련 차량은 최대 2시간까지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요금 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관리범위 공무에 의한 시설물 점검, 폐기물 수거차량, 납품 등 정기적인 방문차량

2. 관리범위의 시설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차량(레미콘, 지게차, 굴삭기 등 외관상 명확히 구분되는 차량과 4.5톤 이상 대형 트럭) 단, 공사자가 이용하는 일반 차량은 1시간 무료로 제한한다.

3. 운영자의 관리범위 외 공무에 의한 차량 중 노들섬 소관 서울특별시 부서, 국방부, 국토부(서울지방항공청), 한강사업본부 및 이촌안내센터의 승인을 받은 차량

4.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고정된 표시가 있는 언론·외교용, 경찰, 소방차량. 단, 언론·외교용은 노들섬 업무관련 방문 목적시에만 적용

5. 서울특별시 로고가 부착된 노들섬 관련 공무 수행 중인 관용 차량

6.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7.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8. 노들섬 기획 행사의 초청 차량 및 행사를 위한 설치, 철수 등 공사, 납품, 운송 차량

9. 노들섬 기획 행사의 관계자 차량에 관하여는 [별표3]을 기준으로 한다.

10. 기타 주차관리부서장이 방문 차량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승인한 차량

제11조(월정기권)

1. 월정기권의 요금은 노들섬 조례에 따라 월 100,000원으로 하며, [별표2]에 따라

- 주차요금의 할인을 적용받는 차량에 대하여는 월정기권의 요금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월정기권 등록은 운영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장애인 직원의 차량을 우선순위에 둔다. 단, 노들섬 업무 관계자로서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주차관리부서장은 주차 가용 구획과 월정기권 수량을 고려하여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3. 월정기권의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납부 및 신청 접수 마감은 전월 20일까지로 한다. 단,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평일 마감한다.
 4. 다음 달 월정기권 요금 미납 시에는 월정기권 등록 자격이 상실되며 그 혜택은 대기자에게 이관된다. 이 경우 월정기권 발급 및 대기 순서는 납부 및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5. 제5조에 따른 할당된 구역에 주차하지 않을 경우 월정기권 등록 자격이 상실되며 이 경우 월정기권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월 1회 위반 시 : 경고장 부착
 - 월 2회 위반 시 : 월정기권 자격 상실
 6. 월정기권 등록 차량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변경 신청 시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허용한다.
 7. 주차장 상황 변동 등 필요시 월정기권 등록 대상 자격 및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자 주차요금)

1. 대관공간에 따른 대관자의 주차요금 면제는 [별표3]과 같다. 단, 대관자의 주차요금 면제는 대관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대관자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일 상한 요금으로 선불 결제할 수 있다. 단, 다른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을 고려하여 선불 결제가 가능한 차량의 대수는 [별표3]을 준용하여 제한한다.
3. 대관자의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점유하는 주차 구획 수와 시간을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4. 대관자의 대규모 행사 시 제6조에 따르며, 일반주차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정된 주차요금을 선결제하여야 한다.
 - 서측 : 1일 700,000원(약 5시간 기준 주차요금 × 서측 주차구획 수 77면)
 - 동측 : 1일 200,000원(약 5시간 기준 주차요금 × 동측 주차구획 수 22면)

제13조(주차요금 환불)

1. 주차요금 정산 후 착오 또는 제9조에서 정한 할인이 미적용 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2. 월정기권 이용자가 사정에 의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유효기간 개시 전 : 전체 월정기권 요금
 - 유효기간 중 10일 미만 경과 시 : 월정기권 요금의 2/3
 - 유효기간 중 20일 미만 경과 시 : 월정기권 요금의 1/3
 - 유효기간 중 20일 이상 경과 시 : 반환 금액 없음
3. 기타 사유로 주차요금 환불 요구 시에는 주차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장 주차장 이용 및 관리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1.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주차장 내의 안내 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영 및 이용하여야 한다.
3.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은 지정된 주차 가능 장소로 운행하여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주차구획선 이외의 구역에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차관리원은 차량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주차
 - 주차장 내에서의 세차, 과도한 차량정비 및 오물제거
 - 다른 주차 차량 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6. 노들섬 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적기를 사용할 수 없다.
7. 이용자는 주차된 차량의 차량 문을 반드시 시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도난 또는 훼손 등 사고에 대하여 노들섬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출입제한 및 주차거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차를 거부하고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만차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
2. 풍수해, 재난 등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불가할 경우
3. 제6조의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안전상 시설 및 행사 관계 외의 차량에 대하여 출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주차장 내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6. 주차관리원의 지시 및 안내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 이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7. 입구 및 통로 등 주차가 불가능한 곳에 주차하여 장내 주차 질서를 문란 시킬 경우
8.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경우
9. 기타 안전상 및 차량의 구조상 주차장 및 시설물 관리의 지장과 타 차량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출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관리원이 출차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처리를 확인한 후에 출차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할인을 요구하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요금관련 이용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장기 무단방치차량 등)
3.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사법기관 등의 요구에 의해 차량 출차 거부가 불가피한 경우

제17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사전 승인을 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이 주차장 내에 1주일 이상 무단 방치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주일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2. 차량소유자가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노들섬 주차장 내에서 방치된 기간 동안의 주차요금과 견인료, 보관료 등 견인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주차장 관리)

1. 운영자는 주차장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관리 부서장이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2.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장 운영 실적이 있는 외부 전문 업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9조(주차관리원의 업무)

1. 주차관리원은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관리원은 입·출차량 관리, 요금정산 업무, 주차장 순찰, 주차관련 민원처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지정주차 구획을 벗어난 지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는 주차위반 경고장을 부착하고 경고하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입차 금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4. 주차관리원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외부인과 마찰이 야기되었을 때

에 즉시 주차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단, 응급환자 등 시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우선 조치한 후 보고 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책임)

1. 주차장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차량 및 노들섬 내 시설에 대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2. 주차관리원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주차관리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손해액의 산정은 사고 당시의 시가에 준하며 당사간의 합의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서 정한다.
4. 주차된 차량에 보관된 어떠한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들섬은 배상할 책임을 가지 않는다.

제21조(면책) 다음의 각 호의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하는 피해
2. 폭등 또는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3.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하는 피해(무단 방치차량 포함)

제22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운영자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23조(관할법원) 본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운영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규정위반시의 책임) 본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21.0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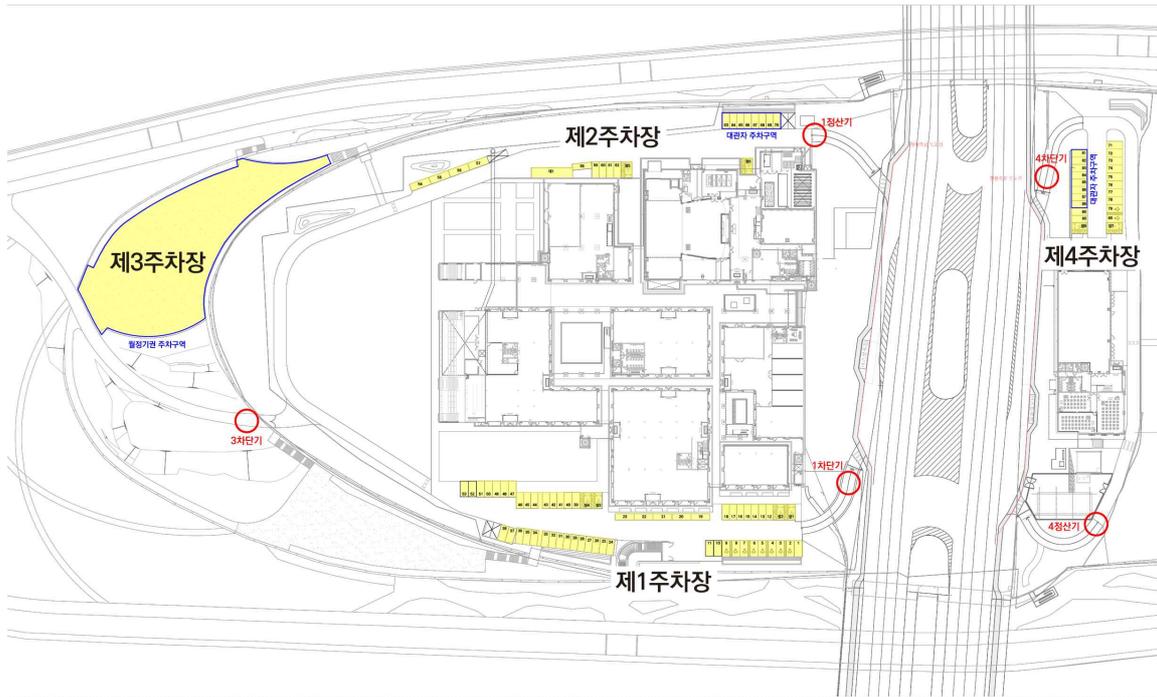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관자 주차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은 제정 전 대관계약을 완료한 2021년 8월 15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의 대관에 대한 주차요금은 제12조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면제한다.

부칙 <개정 2022.04.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노들섬 주차장 주차구역의 구분 <제정 20201.08.12>



구분	이용자	비고
제1주차장	일반주차구역	
제2주차장	대관자 주차구역(면제), 일반주차구역	
제3주차장	월정기관 주차구역	안전상 일반주차 이용 제한
제4주차장	대관자 주차구역(면제), 일반주차구역	

[별표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에 따른 할인 대상 및 요율 <제정 2021.08.12.>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의사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8.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별표3] 노들섬 공간별 주차장 세부 이용 기준 <제정 2021.08.12.>

1. 주차요금 면제는 행사 기간에 한함
2. 제5조 따른 할당 구역의 이용을 우선으로 함
3. 2개소 이상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8대로 한함

구분	내용	비고
잔디마당,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1일 5대 면제	
노들서가, 뮤직라운지 류, 리허설스튜디오, 스페이스445 갤러리1, 기타 야외 공간	1일 3대 면제	
스페이스445 갤러리2, 스페이스445 아트숍, 앤테이블 식물도 플랜트바, 패션라운지, 세미나실A, 세니마실B, 세미나실C	1일 1대 면제	